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 6. 5 선고 2019가단156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재판경과

춘천지방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나52594 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 6. 5 선고 2019가단1564 판결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B

피 고 1. C

2. D

3. E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현희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백현영

변론 종결 2020. 5. 15

판결 선고 2020. 6. 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 10. 20. 접수번호 제2486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소외 F가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사람이 사망한 이후 2009. 10. 3. 원고가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 중 강원도 횡성군 G, H 각 토지와 강원도 횡성군 G 지상 건물 에 관하여 원고의
장남인 소외 B가 2012. 2. 9. 채무자 B, 근저당권자 I조합, 채권최고액 28,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위 채권최고액은 2013. 12. 12. 42,000,000원으로, 2016. 5. 26.
52,000,000원으로 각 변경되었다.

다. 원고는 2016 . 10. 17.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의 다른 자녀들인 피고들에게 각 1/3지분으로
증여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2016. 10. 2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 10. 20. 접수
제2486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증여는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를 포함하여 원고의 자녀들 7명이 나누어 가지는 것으로 알고

한 것인데 이와 달리 원고의 자녀들 중 3명인 피고들에게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이는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 혹은 피고들의 기망 내지 강요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3. 판단

1)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그 전의 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그 무효사유를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0다75044, 2010다75051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원고는 B와 피고들을 포함하여 도합 7명의 자녀들을 둔 사실, 원고는 B와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 피고들이 이 사건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통보한 사실은 앞서 든 증거 및 갑 5의 1 내지 3의 기재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증여의 대상을 착오하였다거나 피고들이 원고를 기망 내지 강요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가 제출하는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김지연

별지